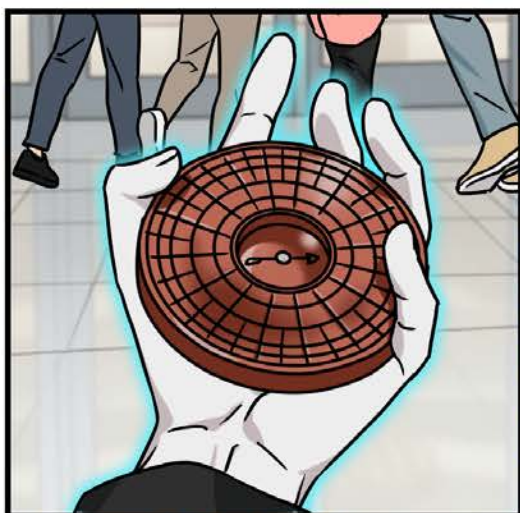


손로몬×판례

3일의 생환기

02. 로몬, 판례 너머를 보다!



사자님, 여긴
아닌 것 같아요.
백화점에
쇼핑하러 오지
누가 소송하러
와요?



허,
'모두를 위한
법률상담'을
한다더니,
때와 장소
가리는 게냐?







사자님의
송침반*이 고장난 거
같아요.

저 분위기는
'소송의 오로라'와
어울리지 않아요.

송침반의 자침은
틀린 적이 없다.



*송침반(訟針盤) :소송을 가리키는 나침반

오, 이건 딱
엄마 옷이네요!

이렇게
비싼 곳을 오면
어떡해? 원룸에 신혼살림
차리게 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엄마, 나 엄마
덕분에 의사
된 거예요.

그러니 딸 덕 좀
보고 살아요.
내가 평생 엄마
 은혜 갚을 테니까.

수련아...

보기 드문
해피엔딩이네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로몬,
섬부른 결정만큼
위험한 건
없는 법이다

설마...
수련 아빠?



수련 엄마...
수련아...



이 인간아!
네가 여기서
쇼핑을 해?

네 딸 얼마나 고생하며
결혼하는 줄도 모르고,
돈이 남아돌아?

진정해,
엄마!

말려야 하지
않아요?
나 영혼인데 어떻게
말리지?

콩 익는 데도
때가 있는 법.
기다려 보거라.



내 딸 고생한 값 내놔.
네가 한 푼도 안 준,
그 양육비 내놓으라고!

미안해,
수련 엄마
수련아...

슈

욱..

엄마...

소송의
오로라예요
무지개 빛
오로라면...

가정법원
사건
아닌가요?

저들의
상담은 너의 몫!
난 저 여인에게
설원재를 열어줄
뿐이야.

잠시후



뭐지? 이런
곳이 있었나?







법률상담소?
마침잘됐네.

양육비 소송하려면
어떡하면 되나요?

내딸 손해 본 인생
보상받고 싶어요.

그 인간 잘 사는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네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양육비 청구권에
관한 판례군요.

혹시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서른 둘이에요
그게 중요한가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
양육비는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양육의무는
종료되고, 양육비는
다른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금전채권처럼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어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권리자가 재산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안타깝지만
따님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 그렇게
어땠어요.

손로몬, 여신에게
살함판의 다음 장을
보여주어라.

"1층 카페에서 수련이 기다리고 있소."

어흑,
수련이 얼굴을
어떻게 봐요! 몇 년만
일찍 알았어도...

가뜩이나 딸한테
미안한 의뢰인에게
딸을 만나라니!
매정한 사람!

제리

헉

소송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요

길이 끝나야
새 길이
나오는 법!

잠시후

엄마! 얼마나
걱정한 줄 아세요?
연락도 안 되고...

이 인간이
여긴 왜 있어!

...

엄마,
아빠 내가 불렀어요.

뭐?

나 어른 되고
아빠 몇 번
만났어요.

아빠가 최근까지
빛 갇느라, 우리
볼 낮이 없었대요.

미안해,
수련엄마.

나, 엄마한테 허락받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식장에 아빠 손 잡고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결혼 선물은 그거
뿐이에요.
허락해 줄거죠?

수련엄마..



이 돈.. 양육비로 꼭 주고
싶어서, 엄치불고하고 당신이랑
수련이 앞에 왔어. 최근까지
통장도 못 만들 처지였다가 빚
갚고 처음 모은 돈이야.
받아줬으면 해.

아빠? ...

수련 아빠...

그리고 이거..
같이 살 때 옷 한 벌
못 해준게 평생 맘에
걸려서..

아까 보니 참 잘
어울리더라. 수련이
상견례 때 입어요.

수련 아빠...



소송 없이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네요.
내 생각이 짧았네요.

무릇 갈등도 화해도
사람의 일. 저들은
그저 새로운 길에
접어든 것뿐이다.

어쨌든
해결된 거니까
한 건으로
쳐주실 거죠?

글쎄...

하루예요~

1건 유효.

- to be continued

양육비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요약

(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성질을 주로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장래 양육비에 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되므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자녀양육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특성이 멀어지고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 내지 구상이라는 순수한 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이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
-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